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2013.10.18(금) 10:00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2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5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7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11.

2. 제안이유

- 가. 거창군의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 나. 상표와 업무표장 출원등록을 함에 따라 그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브랜드 사용대상 및 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7조)
 -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 무료
 - (2)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 3/1,000
 -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무료
- 나. 사용 신청·승인·기간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제6조)
- 다. 브랜드 사용의 책임, 사용승인 취소, 사후관리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 라. 청문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마. 「거창군 농·특산물 고유상표 및 포장디자인 관리운영 조례」 폐지함(안 부칙)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거창군에서는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2년 6월 『거창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2013년 6월 27일 상표와 업무표장 출원등록을 함에 따라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이며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브랜드 사용 대상을 농·특산물, 공산품 등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브랜드 사용신청, 사용승인, 사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하여 금액과 신고, 세입처리기준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 부터는 브랜드 사용의 책임, 사용승인 취소, 사후관리, 청문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부칙에서는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규정함

다. 본 제정 조례는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11.

2. 제안이유

-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하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의식개혁 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범군민의식개혁운동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거창군에서는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 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 함양,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는 전통적 가치관의 재조명으로 인간중심의 사회구현, 전국 상위 10% 이내 명품 자치단체 진입 달성 등을 목표로 범군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식개혁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 친절거창운동 추진사업, 아립1004운동 추진사업 등 세가지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음.
- 안 제5조, 제6조는 재정적 지원과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다. 본 제정 조례는 거창군의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이 저변확산을 통해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민간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11..

2. 제안이유

- 가. 낙후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조 관련기관인 법원, 검찰, 교정시설의 타운화를 추진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을 이전하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3차 변경코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의 표시

필지 수	지목별(m ²)			소유자별(m ²)				
	계	전	임	계	사유	재단	종중	종무
27	33,000	18,429	14,571	33,000	18,984	10,346	3,324	346

※ 필지별 세부현황 : 붙임 1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24번지 일원에 교정시설 포함 196,000㎡의 면적으로 법원, 검찰청, 교정시설, 주차장, 공원, 부대시설, 체육시설, 완충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신축부지 33,000㎡가 필요함.
- 나. 그 동안 법무부 기본조사용역, 거창교정시설 입안제안서 제출, 군 관리계획 결정신청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기재부에 거창지원 이전신축 예산요구 등 가시적인 진행이 있음.
- 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비를 정부의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관련 부지를 조기에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임.
- 라. 따라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갖는 상주인구 증가(교정 공무원 200여명 증가),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붙임 1. 취득재산의 표시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3,000	765,704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45-13	전	259	3,134	2013 ~ 2014	법조타운 조성 (거창지원· 지청이전)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45-14	전	1,041	30,605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45-22	전	115	3,795			정귀홍				
		거창읍 가지리 1345-23	전	100	3,430			최삼순				
		거창읍 가지리 1345-24	전	4,129	151,121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45-25	전	281	10,622			박옥자				
		거창읍 가지리 1345-26	전	492	17,860			정귀홍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557	20,386			서정희				
		거창읍 가지리 1354-1	임	4,917	5,802			재단법인 경상남도향교재단				
		거창읍 가지리 1354-12	임	8	274			정귀홍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24	840			서정희				
		거창읍 가지리 산103-1	임	123	2,792			장봉수				
		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410-4	전			2,549	61,686	2013 ~ 2014	법조타운 조성 (거창지원· 지청이전)	장봉수
				거창읍 상림리 410-5	전			25	610			박점수
거창읍 상림리 412-1	전			1,378	33,623	장준석						
거창읍 상림리 412-3	전			397	9,766	이상호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4,958	119,984	김무선						
거창읍 상림리 702-2	전			1,030	24,205	거창유씨 참여공파종중						
거창읍 상림리 703-3	전			524	13,310	임종훈						
거창읍 상림리 703-6	전			594	14,612	거창유씨 참여공파종중						
거창읍 상림리 산21-1	임			42	1,058	이상호						
거창읍 상림리 산21-4	임			2,869	72,299	이상호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48	1,094	이원종무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6,794	이원종무						
거창읍 상림리 산24-4	임			4,542	119,909	전영순						
거창읍 상림리 산25-1	임			120	69	거창유씨 참여공파종중						
거창읍 상림리 산25-7	임			1,580	36,024	거창유씨 참여공파종중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0.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0. 0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0. 11..

2. 제안이유

- 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법 검찰청 거창지청 등 법조 관련기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성산마을을 선정 하였음.
- 나. 이에 따라 성산마을 22가구 80여명의 생활 근거지를 옮기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3차 변경코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의 표시

필지수	지목별(m ²)			소유자별(m ²)			
	계	전	도	계	사유	농림축산식품부	종중
5	6,301	5,993	308	6,301	4,699	308	1,294

※ 필지별 세부현황 : 붙임 1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10번지 일원에 6,301㎡의 면적으로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그 동안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부의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한센인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나. 그 동안 사전 주민설명회, 관련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쳤고 양돈과 양계가 주 생업 수단이며 저 소득가구 축사 현대화의 어려움을 겪는 민원의 해결 등 효과를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 다만,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이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적극 해소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